

행복한 도민  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  
2015. 9. 11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  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광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이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‘부서의 국·본부장’ → ‘부서의 실·본부장’으로 명칭 통일(안 제2조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제3조제1항, 제4조, 제5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라 시·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

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재 난안전대책본부장”을 “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담당 하는 부서의 국·본부장”을 “담당하는 부서의 실·본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충청북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을 “충청북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총괄 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명 ”를 “지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령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시행령』 제6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제6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에 한하여 회 의를”을 “경우에만 회의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들 ”를 “위원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기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상사 업을”을 “대상사업을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대

상사업”을 “대상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”을 “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서 명하여”를 “서명하여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“제반사항”을 “모든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안에서 『충청 북도』”를 “안에서 『충청북도』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자연재해 대책법』 제4조제5항 <u>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재 난안전대책본부장이</u>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"검토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<u>담당 하는 부서의 국·본부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<u>충청북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</u>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제3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<u>총괄</u>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<u>지명</u>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에 따른 충청북도</u> <u>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담당하는 부서의 실·본부장</u> 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충</u> <u>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</u> ---- -----.</p> <p>제3조(위원장 직무) ① ----- ----- <u>총괄</u>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<u>지명</u> ----- -----.</p>



제4조(기능) 검토위원회는 『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(생략)
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(생략)
4.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
제5조(검토위원회 운영)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

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

제4조(기능) -----  
-----『시행령』 제6조제1항에 따  
른 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 -----  
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영제6조제2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

제5조(검토위원회 운영) ① -----  
-----제2조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경우에만  
회의를 -----.

③ -----  
-----위  
원들 -----.

다.

제6조(임기) ① (생략)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 ①

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협의검토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,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

제11조(회의록) ① 제5조의 규정에

제6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남은기간 -----.

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 ① -

-----  
대상사업을 -----  
-----그 밖의 -----  
-----  
-----대상사업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위  
촉 해제 -----  
-.

③ -----  
-----경우에는  
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 
해제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-----  
-----  
-----

제11조(회의록) ① 제5조에 따라 -

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수당과 여비)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서명하여 -----.

제12조(간사) ① 제5조에 따라 ---  
-----  
-----모든 사항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수당과 여비) -----  
-----안에서  
『충청북도 -----  
-----  
-----.